

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
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
안정적 재원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도모.

나. 시금고·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
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후 2017 회계연도
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지방
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(1) 대상기관 :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

- 대 표 : 남유진
- 소재지 :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
- 출연금액 : 550,000천원

※ 시금고 약정(2016. 9. 7.)

구분	총액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대구은행	12억원	4억원	4억원	4억원	
농협	5억원	1.5억원	1.5억원	2억원	

나. 주요 사업

(1) 사 업 명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

(2) 사업기간 : 2011년부터

(3) 사업장소 : 구미시 송정대로 55, 총무과

(4) 사업내용

- (재)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기금의
이자수익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
- 2017년 장학생 선발계획 : 190명, 3.1억원 지급예정
 - ▶ 고등학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고교특기장학금
 - ▶ 대 학 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기회균등/예체능특기 장학금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「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」의
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금고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일환
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협약함에 따라,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1항 규정에
의하여 구미시·금고 간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,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
하므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출연이 필요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- (4)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 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

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1.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

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김 종 율
	담 당	강 호 근
	담 당 자	배 수 정 (480-6783)